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상품요약서

◆ 보험가입 자격요건 및 상품의 특이사항

1. 상품의 특이사항

Q1.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이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입니다.
- ② 이 보험은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일반사망형]** 이 보험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과 기본보험료의 10%의 합계액이며,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장해형] 이 보험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다만,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 ⑤ 이 보험은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보험료 감액 등 보험료의 자유입출금 기능이 강화된 상품입니다.

Q2.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되나요?

이 보험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최저보증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손실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Q3.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추가납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기본보험료가 납

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기본보험료의 2배+추가납입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합계액-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의 한도: 기본보험료의 2배+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Q4.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계약자적립액 인출(중도인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60%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출금은 「인출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는 인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5.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은 무엇인가요?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 이후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자동 이전하는 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 기능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105%부터 200%까지의 수익률 중 5% 단위의 수익률 한 가지를 목표수익률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액}}{\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③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합니다. 이 경우 「목표수익률 도달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④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자동 이전된 이후에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투입됩니다.
- ⑤ 계약자는 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따라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된 후에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으로 인한 경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⑦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도달 전에는 목표수익률의 신규설정, 변경 및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이때, 변경하려는 목표수익률은 변경신청일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수익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 ⑧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한 경우 최초 가입을 할 때부터 평균분할투자 기간이 끝나는 동안 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평균분할투자는 무엇인가요?

- ① 계약자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평균분할투자를 최초 가입을 할 때부터 특별계정으로 이체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보험료에 대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액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이체됩니다.
- ② 계약자가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펀드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를 신청한 날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펀드의 잔여 금액 전부를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합니다. 다만, 특별계정 이체 전 취소의 경우 해당 기능만 적용 해제처리합니다.
- ④ ①에 따라 이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2~36개월 월단위 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마다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로 자동이체됩니다. 다만, 월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체됩니다. 이 때,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총좌수를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에는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 ⑤ 보험료의 납입 등으로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의 좌수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증가일부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증가일의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의 총좌수를 [평균분할투자기간의 개월 수 - 기존 평균분할투자 경과월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의 경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 ⑥ 아래의 사유 등으로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의 좌수가 감소하였을 때에는 감소일부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감소일의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 총좌수를 [평균분할투자기간의 개월 수 - 기존 평균분할투자 경과월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의 경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 월대체공제액이 차감된 경우
- ⑦ 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경우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7.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일반계정 전환은 무엇인가요?

- ① 일반계정 전환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자적립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상 지난 계약
 -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 ③ 계약자가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제3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또한, 전환된 계약의 전환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지 않으며, 일반계정에서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 ④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환일의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에 미달하거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일반계정 전환 신청은 취소되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보험금은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Q8.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자동인출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정한 일정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지급받는 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서비스기간 및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의 자동인출금액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동인출서비스에 의한 인출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신청일(신청일부터 한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신청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지급일'이라 합니다)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마다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자동인출서비스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9.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재해장해형의 경우 최저사망적립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개인형

(2)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연금형: 종신(보증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보증지급) 상속연금형: 종신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년~40년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지급 개시 전에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납입기간	구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일시납	일반사망형	만15세~70세	(가입나이 + 10세) ~ 80세
	재해장해형	0세~70세	(가입나이 + 10세) ~ 8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 세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4)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5) 납입보험료의 한도

① 기본보험료: 2,000만원 이상

②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 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기본보험료의 2배+추가납입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합계액-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의 한도: 기본보험료의 2배+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6) 건강진단 여부: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1) 일반사망형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_일반사망형 [주계약]

+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제도성 특약]

+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제도성 특약]

(2) 재해장해형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_재해장해형 [주계약]

+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제도성 특약]

+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제도성 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약관 제3조 제1호)

(1) 일반사망형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보험금 청구일 + 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

- (주)1. 「계약자적립액」은 이 보험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대체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상기 표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2) 재해장해형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기본보험료의 20%

- (주)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다만,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대체공제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더 이상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약관 제3조 제2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공시이율, 보증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중 선택
--	---------------	---

■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약관 제32조 제1항 제3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종신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공시이율, 보증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첫번째 연금월액 (연금지급 개시시점)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1개월 후의 이자 상당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 – 두번째 이후 연금월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첫번째 연금월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한 1개월간의 이자 상당액 ※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금월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연금형 선택비율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정한 연금지급기간(5년~4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연금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3.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4.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용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공시이율)」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합니다.
8.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액 잔여분을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9.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10.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4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11.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이내에서 5% 단위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약관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1% 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12. 노후설계자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노후설계자금에서 매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설계자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13. 연금지급 개시 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1)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제한

1) 일반사망형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재해장해형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제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3) 계약의 무효

1) 일반사망형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해장해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 ③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 포함)된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할 때,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입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 포함)된 후부터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됩니다. 2026년 01월 현재 공시이율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

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와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의 경우 각각 연복리 2.00%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공시이율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시그니처 A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보증이율[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Q: 최저보증이율이란 무엇이며, 이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은 얼마인가요?

A: 시그니처 A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은 변액보험이므로 특별계정에서 운용될때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를 보증하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A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4. 적용위험율

Q: 적용위험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구 분	무배당 예정 사망률		
	20세	40세	60세
남 자	0.000280	0.000650	0.003390
여 자	0.000200	0.000430	0.001390
구 분	무배당 예정 80%이상 재해장해 발생률		
	20세	40세	60세
남 자	0.000016	0.000014	0.000074
여 자	0.000005	0.000003	0.000021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구 분	예정 개인연금 사망률		
	50세	60세	70세

남 자	0.000600	0.001060	0.002430
여 자	0.000370	0.000410	0.000830

※ 가입나이 30 세 기준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는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시납인 경우 해약공제액은 없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변액연금보험의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GMAB)을 보증하지 않는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집수수료를

Q: 모집수수료란?

A: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예시>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개시, 일시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1.50% ^{주1)}	0.98% ^{주1)}	0.00% ^{주1)}	0.00% ^{주1)}	2.48% ^{주2)}

(주)1. 1년~4차년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

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3.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 의무 이행 관련 고객 안내 사항**

저희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국내외 자금세탁방지/반테러/반부패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상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를 고객님의 요청드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해당 거래 및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거래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일반사망형]

수수료 안내표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55세, 기본보험료 5천만원,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납입기간 이내	납입기간 이후 연금개시 전	
초회(납입 시)	2차월 이후~15차월까지	16차월 이후 ~ 10년
기본보험료의 1.60380% (801,900원)	매월 기본보험료의 0.09980%~0.09995% (49,900원~49,975원)	매월 기본보험료의 0.029950%~0.032180% (14,975원~16,090원)

(주) 상기 비율 및 금액은 해당기간에서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초회(납입시): 기본보험료의 1.602% (801,000원)
			2차월 이후 ~ 15차월까지: 기본보험료의 0.070% (35,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2차월 이후: 기본보험료의 0.028% (14,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180% ~ 0.00418% (900원 ~ 2,090원)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매일	SI멀티팩터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20548% (연 0.805%) SI글로벌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61644% (연 0.955%) SI글로벌혁신테마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20548% (연 0.805%) SI답라링자산배분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20548% (연 0.805%) 국내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글로벌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35616% (연 0.495%) 골드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달러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리츠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MM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41096% (연 0.150%)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13699% (연 0.050%) 티켓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23288% (연 0.450%)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SI멀티팩터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SI글로벌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SI글로벌혁신테마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1%) SI답라링자산배분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국내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글로벌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골드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달러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1%) 리츠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5%) MM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티켓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3%)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SI멀티팩터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9589% (연 0.40%) SI글로벌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54795% (연 0.20%)

			AI글로벌혁신테마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38356% (연 0.14%) AI답라링자산배분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43836% (연 0.16%) 국내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41096% (연 0.15%) 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16438% (연 0.06%) 글로벌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08219% (연 0.03%) 골드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80822% (연 0.66%) 달러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68493% (연 0.25%) 리츠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65753% (연 0.24%) MM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27397% (연 0.10%)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21918% (연 0.08%) 티켓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16438% (연 0.06%)
보증비용	연금개시시점 의 최저계약자적 립액 보증	매월	해당사항 없음
	최저사망보험 금 보증	매월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의 0.00416667% (연 0.05%)
연금수령기 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 시	연금액의 0.5%
	노후설계자금 관리비용	매월	매월 노후설계자금계약자적립액의 0.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 (주)1. 위험보험료: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험보험료를 범위로 표시하였습니다.
2.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용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3.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5.01.01~2025.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제세공과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비용 산출기간이 펀드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설정일 이후의 증권거래비용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치로 예시하였고 신규 설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4. 기초펀드보수·비용: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연도(2025.01.01~2025.12.31)의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신규설정 펀드의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비용 은 해당 특별계정 (펀드)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상기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 시	없음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 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 시	없음
---------	-------------	--------	----

[재해장해형]

수수료 안내표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55세, 기본보험료 5천만원,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납입기간 이내	납입기간 이후 연금개시 전	
초회(납입 시)	2차월 이후~15차월까지	16차월 이후 ~ 10년
기본보험료의 1.60206% (801,032원)	매월 기본보험료의 0.09806% (49,032원)	매월 기본보험료의 0.02806%~0.02812% (14,032원~14,062원)

(주) 상기 비율 및 금액은 해당기간에서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 용	매월	초회(납입시): 기본보험료의 1.602% (801,000원)
			2차월 이후 ~ 15차월까지: 기본보험료의 0.070% (35,000원)
	계약관리비 용	매월	2차월 이후: 기본보험료의 0.028% (14,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06% ~ 0.00012% (32원 ~ 62원)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매일	Si멀티팩터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20548% (연 0.805%) Si글로벌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61644% (연 0.955%) Si글로벌혁신스테마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20548% (연 0.805%) Si딜러링자산배분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220548% (연 0.805%) 국내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글로벌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35616% (연 0.495%) 골드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달러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리츠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8219% (연 0.395%) MM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41096% (연 0.150%)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13699% (연 0.050%) 티켓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23288% (연 0.450%)
	증권거래비 용 및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Si멀티팩터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Si글로벌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Si글로벌혁신스테마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1%) Si딜러링자산배분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국내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글로벌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골드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2%) 달러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1%) 리츠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5%) MM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0%) 티켓채권ETF재간접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연 0.03%)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Si멀티팩터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09589% (연 0.40%) Si글로벌주식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54795% (연 0.20%) Si글로벌혁신스테마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38356% (연 0.14%)

			AI답라잉자산배분형 :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43836% (연 0.16%) 국내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41096% (연 0.15%) 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16438% (연 0.06%) 글로벌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08219% (연 0.03%) 골드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180822% (연 0.66%) 달러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68493% (연 0.25%) 리츠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65753% (연 0.24%) MM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27397% (연 0.10%) 평균분할투자MMF재간접: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21918% (연 0.08%) 티켓채권ETF재간접형: 펀드계약자적립액의0.00016438% (연 0.06%)
보증비용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 적립액 보증	매월	해당사항 없음
	최저사망적 립액 보증	매월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의 0.00416667% (연 0.05%)
연금수령기 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 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액의 0.5%
	노후설계자 금 관리비용	매월	매월 노후설계자금계약자적립액의 0.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 (주) 1. 위험보험료: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고도재해장해 보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험보험료를 범위로 표시하였습니다.
2.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3.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5.01.01~2025.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제세공과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비용 산출기간이 펀드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설정일 이후의 증권거래비용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치로 예시하였고 신규 설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4. 기초펀드보수·비용: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연도(2025.01.01~2025.12.31)의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신규설정 펀드의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 비용 은 해당 특별계정(펀드)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상기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 시	없음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 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 시	없음
---------	-------------	--------	----